

2021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결과

2021. 7.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I . 점검실시 개요	1
-------------------	---

II . 총 평	2
----------------	---

III .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3
-------------------------------	---

IV . 점검결과 처분요구서	5
-----------------------	---

I . 점검실시 개요

1. 점검배경 및 목적

-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시 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점검 실시

2. 추진내용

- 점검대상 : 우리 시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12개 건설공사 현장

발 주 처	건수	대상 공사현장
계	12	
도시기반시설본부	6	▽▽▽ ▽▽▽▽ 및 ▽▽▽▽▽▽ 건설공사 외 5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	3	○○○○○ ○○○○○○ ○○○○○○ 외 2개소
서울교통공사	3	◇◇◇◇◇◇ ◇◇~◇◇◇◇ ◇◇◇ ◇◇공사 외 2개소

- 점검기간 : 2021. 1. 18. ~ 2. 5.(기간 중 7일간)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3명
- 감사범위 :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관련사항

3. 감사중점

- 근로자 노임 및 하도급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
- 근로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서면계약서 작성실태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접수 민원처리 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징 (환수)	감액						
18	1	-	0	0	0	0	0	1	0	0	1	0	16
								1					

II. 총 평

- 2021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도급 대금·임금 등 체불예방을 위해 서울시,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12개 공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 대부분 현장은 하도급 관리, 건설기계 투입, 노무관리 등 분야별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나,
 -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장비대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미사용 등 현장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임금항목, 지급시기 등) 누락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향후, 서울시 공사현장의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이번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는 행정처분, 관리의무를 소홀히 공사담당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함.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기관(발주부서)에 통보.

Ⅲ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관계기관	공사명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조치현황	비고
1	도시 기반 시설본부 (가부)	△△△ △△△△ △△ △△△△시설 건설공사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근로계약서 보완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임대차계약서 보완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3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	현지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서명 누락	현지조치	직불합의서 보완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5		◇◇◇◇◇ ◇◇◇◇◇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	현지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6		□□□ □□□□□□ □□ 건설공사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근로계약서 보완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7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	현지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8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지급보증 안내문 게시	조치완료
9	도시 기반 시설본부 (나부)	◆◆◆◆ ◆◆ ◆◆◆◆공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임대차계약서 보완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10	○●●●○ ○●●●○공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지급보증 안내문 게시	조치완료	
11	서울주택 도시공사 (가부)	▽▽▽ ▽▽▽▽ 및 ▽▽▽▽▽▽ 건설공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기한 내 미지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통보 주의요구	위반업체 행정처분 관련자 신분상 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12	서울주택 도시공사 (나부)	▷▷▷ ▷▷▷▷ ▷▷공사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근로계약서 보완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13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현지조치	근로계약서 보완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연번	관계기관	공사명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조치현황	비고
14	서울주택 도시공사 (다부)	○○○○ ○○○○○○ ○○○○공사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근로계약서 보완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지급보증서 발급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1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방역지침 이행 미흡	현지조치	방역지침 이행 관리 및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17	서울교통공사 (가사업소)	◇◇◇◇◇◇ ◇◇◇◇◇◇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	현지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조치완료

※ 불입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건, 현지조치사항 16건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기한 내 미지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서울주택도시공사(가부,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9. 7. 29. A사와 1개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 및 ▽▽▽▽▽▽ 건설공사”(공사기간 '19. 7. 31. ~ '22. 1. 26, 이하 ‘이 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2019. 11. 20. B사와 이 건 공사 중 “토목공사”(공사기간 '20. 11. 20.~ '21. 10. 30, 이하 ‘이 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9개 업체와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및 ▽▽▽▽▽▽ 건설공사	25,399	A사 외 1	'19.7.31.~ '22.1.26.	B사 외 8

1. 건설기계대여대금 기한 내 미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본다.

아울러 하수급인 B사(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체결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1. 1. 28. 점검 당일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총 3건 18,947천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표 2] 건설기계 대여대금 기한 내 미지급 현황

연번	임차인 (하수급인)	임대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계약체결 (월)	건설기계명	체불금액 (천원)	작업기간 (월)	체불기간 (월)	비고
계					18,947			
1	B사	○○○○중기	'20. 2.	굴삭기	5,937	'20. 6.	5	미지급
2		◇◇전기	'20. 4.	굴삭기	11,470	'20.10.	1	지연지급 (21.1.29. 지급)
3		☆☆건설기계	'20. 7.	굴삭기	1,540	'20. 7.	4	지연지급 (21.2.1. 지급)

그 결과 건설공사의 건설기계 대금의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 대금체불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미지급 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규정을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발주청)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385호) 제3장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13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만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발주청의 공사감독(공사관리관)은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B사가 아래 [표 3]과 같이 총 5건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표 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내역

연번	임차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 종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천원)
계					2,860
1	B사	★★★건설중기	덤프트럭	'20. 11. 30.	880
2		◁◁	덤프트럭	'20. 11. 30.	495
3		▷▷중기	굴삭기	'21. 1. 29.	550
4		◇◇건설중기	굴삭기	'21. 1. 29.	495
5		◆◆중기	굴삭기	'21. 1. 29.	440

그리고 해당 공사에서는 아래 [표 4]와 2020. 9.21.부터 2021. 1. 11.까지 「서울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총 3건 65,764천원의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 민원이 신고·접수되었다.

[표 4]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민원 신고 현황

연번	임차인 (하수급인)	신고인	민원신고일	민원종류	체불금액 (천원)
계					65,764
1	B사	■■건설기계	'20. 9. 21.	장비대금 체불	42,845
2		◆◆건설중기	'20. 10. 6.	장비대금 체불	2,200
3		♠♠건기	'21. 1. 11.	장비대금 체불	20,719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체불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미확인 등 민원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6항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위 사실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해당 공사관리관과 공사관계자는 이견 없이 동의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① 하수급인(B사)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미지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공사대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를 임차를 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미확인과 관련민원 발생 등 공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소속 및 직위		직 위 (직명)	성 명	관리기간	조치내용
행 위 시	현 재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주임	○○○○	'19. 7. 29. ~21. 2. 4.	주의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시설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시설 건립공사	2,326	A사 외 1	'20.6.8.~ '21.8.2.	B사 외 1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종사할 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표 2]와 같이 ○○○ 등 3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연번	사용자	근로자	계약서 체결일	지적사항
1	A사	○○○	'20.09.01	임금 미기재
2		□□□	'20.10.05	임금 미기재
3		◇◇◇	'20.10.10	임금 미기재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액, 임금지급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시정)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시설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시설 건립공사	2,326	A사 외 1	'20.6.8.~ '21.8.2.	B사 외 1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임대차 기간',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임대료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B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기 외 1개 업체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인 임대료 항목을 누락하였다.

[표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 내역

임차인 (하수급인)	임대업자	종류	계약서 체결일	지적사항
B사	◆◆건기	기중기	'20.08.25.	임대료 항목 누락
	★★건설	천공기	'20.09.20.	"

- 그 결과 임차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발생 및 이에 따른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대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3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 미사용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시설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시설 건립공사	2,326	A사 외 1	'20.6.8.~ '21.8.2.	B사 외 1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19. 3. 28.시행)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예규 제722호, '18. 8. 23. 시행)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

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 시행안내」(건설혁신과-6975, '20.5.22.) 및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일정 변경안내」(건설혁신과-9566, '20.7.23.)에 따르면 우리 시(건설혁신과)에서는 '20.11.1.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전환 사용하도록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통보하였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B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하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임의대로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미사용 내역

연번	지급항목	지급자 (하수급인)	지급받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지급월	지급금액 (천원)	지급방법
1	건설기계 대여대금	B사	○○중기	'21.1월	18,6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하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
2			◆◆전기	'21.1월	7,095	
3			★★건설	'21.1월	17,000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4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서명 누락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시설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시설 건립공사	2,326	A사 외 1	'20.6.8.~ '21.8.2.	B사 외 1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등)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 서식)로 갈음 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인(A사)과 하수급인(B사, C사)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작성하면서 발주자 및 수급인의 서명을 누락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서명 누락 내역

수급인	하수급인	합의서 체결일	지적사항
A사	C사	'20.10.7.	발주자, 수급인 서명누락
	B사	'20.8.10.	발주자 서명 누락

○ 그 결과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원활하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에 누락된 서명을 보완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5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 미사용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D사 외 2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건립공사	4,632	D사 외 2	'20.6.30.~ '22.6.30.	E사 외 4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19. 3. 28.시행)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예규 제722호, '18. 8. 23. 시행)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

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 시행안내」(건설혁신과-6975, '20.5.22.) 및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일정 변경안내」(건설혁신과-9566, '20.7.23.)에 따르면 우리시(건설혁신과)에서는 '20.11.1.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전환 사용하도록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통보하였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D사와 하수급인 E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임의대로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미사용 내역

연번	지급항목	지급자	지급받은자	지급월	지급금액 (천원)	지급방법
1	하도급대금	D사	E사	'20.9월	163,60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계좌에서 지급
2			F사	'20.11월	27,000	
3	건설기계 대여대금	D사	♠♠♠♠중기	'20.9월	605	
4		E사	♣♣건기	'20.11월 '21.1월	39,711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6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G사 외 2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건설공사	13,483	G사 외 2	'19.9.2.~ '21.10.31.	H사 외 4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종사할 업무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H사 등 4개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 등 88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란에 하수급인 건설사를 기재하지 않고 수급인인 'G사'로 오기재 하였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연번	사용자 (하수급인)	근로자	지적사항
1	H사	○○○ 등 6명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란에 하수급인이 아닌 수급인 'G사'로 오기재
2	I사	○○○ 등 3명	
3	J사	□□□ 등 3명	
4	K사	☆☆☆ 등 76명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액, 임금지급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7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 미사용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G사 외 2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건립공사	13,483	G사 외 2	'19.9.2.~ '21.10.31.	H사 외 4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19. 3. 28.시행)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예규 제722호, '18. 8. 23. 시행)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

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 시행안내」(건설혁신과-6975, '20.5.22.) 및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일정 변경안내」(건설혁신과-9566, '20.7.23.)에 따르면 우리시(건설혁신과)에서는 '20.11.1.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전환 사용하도록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통보하였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G사 '20.10.31.까지는 '대금e바로', '20.11.1. 이후부터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표 2]와 같이 '대금e바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 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미사용 내역

지급항목	지급자 (수급인)	지급받으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사용기간	지급금액 (천원)	지급방법
건설기계 대여대금	G사	■■■■렌탈	'20.8.29. ~'21.2.28.	26,40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계좌에서 지급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 하였으며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8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문 미게시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G사 외 2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건립공사	13,483	G사 외 2	'19.9.2.~ '21.10.31.	H사 외 4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아래 [표 2]의 별지 제26호의3서식(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9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p>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p> <p>1. 내 용</p> <p>○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L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30%;">공사명</th> <th style="width: 15%;">계약금액 (백만원)</th> <th style="width: 15%;">수급인</th> <th style="width: 15%;">공사기간</th> <th style="width: 25%;">비고 (하수급인)</th> </tr> </thead> <tbody> <tr> <td>◆◆◆◆ ◆◆◆◆공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29,373</td> <td style="text-align: center;">L사 외 1</td> <td style="text-align: center;">'18.1.1.~ '21.3.31.</td> <td style="text-align: center;">M사 외 13</td> </tr> </tbody> </table> <p>○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임대차 기간',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임대료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p>○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M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중기와 2건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인 임대료 항목을 누락하였다.</p> <p>[표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 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15%;">임차인 (하수급인)</th> <th style="width: 15%;">임대업자</th> <th style="width: 15%;">종류</th> <th style="width: 15%;">계약서 체결일</th> <th style="width: 40%;">지적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M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덤프트럭, 굴삭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1.</td> <td style="text-align: center;">임대료 항목 누락</td> </tr> </tbody> </table>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공사	29,373	L사 외 1	'18.1.1.~ '21.3.31.	M사 외 13	임차인 (하수급인)	임대업자	종류	계약서 체결일	지적사항	M사	◆◆◆◆중기	덤프트럭, 굴삭기	'20.1.1.	임대료 항목 누락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공사	29,373	L사 외 1	'18.1.1.~ '21.3.31.	M사 외 13																					
임차인 (하수급인)	임대업자	종류	계약서 체결일	지적사항																					
M사	◆◆◆◆중기	덤프트럭, 굴삭기	'20.1.1.	임대료 항목 누락																					

- 그 결과 임차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체불 및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0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문 미게시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N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공사	13,728	N사 외 1	'19.8.12.~ '23.4.11.	O사 외 3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아래 [표 2]의 별지 제26호의3서식(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 3 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연번	상 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N사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유무 및 보증기관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문을 공사현장 내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1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1. 내 용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C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 ▷▷▷▷▷ ▷▷공사	2,232	C사 외 1	'20.9.11.~ '21.9.10.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종사할 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C사는 [표 2]와 같이 ♡♡♡ 등 2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연번	사용자	근로자	계약서 체결일	지적사항
1	(주)▽▽▽▽▽▽▽▽	♡♡♡	'20.11.2	임금액 미기재
2		♡♡♡	'20.11.30	임금액 미기재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액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2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1. 내 용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C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 ▷▷▷▷▷ ▷▷공사	2,232	C사 외 1	'20.9.11.~ '21.9.10.	

- 이 건 공사의 입찰공고문에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사계약 첨부서류인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제6조(주휴수당)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시 포괄임금 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C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 등 6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포괄임금 형태의 변형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

[표 2]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내역

연번	사용자	근로자	계약서 체결일	지적사항
1	C사	□□□	'20.11.6	서울시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2		▲▲▲	'20.11.6	

연번	사용자	근로자	계약서 체결일	지적사항
3	C사	■■■	'20.11.6	서울시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4		◆◆◆	'20.11.9	
5		☆☆☆	'20.11.27	
6		▣▣▣	'20.11.27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서울시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3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1. 내 용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D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 ○○○○○○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공사	72,705	D사	'17.9.5.~ '21.12.31.	E사 외 8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종사할 업무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의 동의는 근로계약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D사와 하수급인 E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 등 89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사용자 및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누락하였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연번	사용자	근로자	지적사항
1	D사	◆◆◆ 등 25명	근로자 및 사용자 서명·날인 누락
2		◎◎◎ 등 41명	사용자 서명·날인 누락
3	E사	■ ■ ■ 등 23명	근로자 및 사용자 서명·날인 누락

○ 그 결과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법률적 혼란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권리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4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1. 내 용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D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 ○○○○○○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공사	72,705	D사	'17.9.5.~ '21.12.31.	E사 외 8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하여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E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표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내역

임차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종류	대여금액 (천원)	지적사항
E사	◆◆크레인	기중기	38,00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체불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5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방역지침 이행 미흡

1. 내 용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D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 ○○○○○○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공사	72,705	D사	'17.9.5.~ '21.12.31.	E사 외 8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방역 강화 방안 통보」(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17174호, '20.12.24)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방역 강화 방안 통보」(서울주택도시공사 재난안전실-4814호, '20.12.28)에 따르면, 서울시 공사장의 원도급사 현장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의 방역관리자로서 아래 [표 2]와 같이 단계별 대응수칙에 따른 이행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표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 주요내용

〈단계별 대응수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공 통	• 매일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1일 2회 이상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검사 결과 기록	
	• 작업공간 일 1회 이상 환기 •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등) 일 1회 이상 소독			+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 현장사무실 등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 창문개방 어려운 경우 일 2시간 마다 1회 환기				
	• 전담 조직(또는 전담자) 지정, 방역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 • 밀폐된 공간 마스크 착용 • 보건소 등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명부작성 철저 • 방역수칙 홍보물 부착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등 자제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소 등 즉시 신고 • 건설근로자 휴가, 연차 등 사용 적극 활용				

〈책임자 수칙〉

구분	건설관리자 책무
원도급사 현장소장 (방역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항목별 이행사항 점검(일일)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점검(수시) • 공사장 내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하도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교육(매일) • 소속 근로자 대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확인(매일) 등

○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 ○○○○○○ ○○○○공사’의 수급인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¹⁾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공사장 출입자들에 대해 체온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나, 아래 [표 3]과 같이 대응지침 통보일(‘20.12.24)로부터 점검당일(‘21.2.5)까지 체온 측정 결과를 총 4회만 기록하는 등 방역지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방역지침 이행 미흡 현황

발주기관	공사명	수급인	지적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 ○○○○○○ ○○○○공사	D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시 매일 2회 이상 체온 측정, 검사결과 기록 미이행

- 그 결과 이 건 공사장에 대한 적절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 확산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련 방역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관에서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인 모든 현장에 대해 방역지침 이행 실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현지조치)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1) '20.12.8.부터 감사당일인 '21.2.5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6	부서·기관명	서울교통공사 (가사업소)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4.
------	----	--------	------------------	-----------------	---------

제 목 :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 미사용

1. 내 용

- 서울교통공사는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 ◇◇◇◇ ◇◇◇◇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 ◇◇공사	1,287	A사 외 1	'20.1.14.~ '22.1.12.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19. 3. 28.시행)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22호, '18. 8. 23. 시행)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

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 시행안내」(건설혁신과-6975, '20.5.22.) 및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일정 변경안내」(건설혁신과-9566, '20.7.23.)에 따르면 우리시(건설혁신과)에서는 '20.11.1.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전환 사용하도록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통보하였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와 B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 외 27명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미사용 내역

연번	지급항목	지급자 (수급인)	지급받은자 (근로자)	지급일	총 지급금액 (천원)	지급방법
1	노무비	A사	◆◆◆ 외 23명	'21.1.19	55,23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계좌에서 지급
2		B사	◆◆◆ 외 3명	'20.12.30	5,032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해당 공사의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